

고성군 기념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(의안번호 제2886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12. 27.

허옥희 의원 등 8인

나. 회 부 일 자 : 2025. 01. 03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5. 01. 14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최두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지역사회 발전 및 향토의 명예를 빛낸 인물이나 단체를 찾아내 숭고한 뜻을 기리고 고성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공적비, 기념비, 동상 등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건립대상 및 선정기준(안 제4조)
- 건립승인 및 사실확인(안 제5조)
-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(안 제7조 및 제8조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-56호
 - 예고기간: 2024. 12. 27.(금) ~ 2025. 1. 2.(목)[6일간]
 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장혜정)

- 고성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공적비, 기념비, 동상 등 기념물의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○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
- 조례의 목적, 정의 및 적용범위(안 제1조~제3조)
 -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여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, 용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의하였으며,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음.
- 건립대상 및 선정기준(안 제4조)
 - 기념물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에 따라 객관적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였음.
- 건립승인 및 사실확인, 관리(안 제5조~제6조)
 - 기념물 건립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유지 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위원회 설치, 구성, 회의 등(안 제7조~제9조)
 - 기념물 건립의 적격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기념물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과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상위법령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, 고성 군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향토의 명예를 빛낸 인물이나 단체를 발굴하여 공적비, 기념비, 동상 등 기념물의 건립 및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1. 14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